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정진욱 · 안도걸 · 허종식
이개호 · 김문수 · 양부남
윤준병 · 박지원 · 전진숙
서삼석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제정 및 운영”을 “및 전기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전기의 날”을 “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행사”로, “사항은”을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기인의 공로를 기리고, 전기 분야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전기의 날 <u>제정 및 운영</u>)	제5조(전기의 날 <u>및 전기인의 날</u>)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기인의 공로를 기리고, 전기 분야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전기의 날</u> 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u>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u> ----- ----- -----.
③ 제2항에 따른 <u>전기의 날 기념행사</u> 에 필요한 <u>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u>기념행사</u> ----- ----- <u>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은-----.